

 <p>교육부</p>	<h1>보도자료</h1> <p>2020. 8. 10.(월) 배포</p>	
--	---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 발표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0일(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등학교**(교장 최정환, 이하 '휘문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은 법령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7월 28일(화) 관련 법령**에 따라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1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

□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8월 5일(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 지정 취소 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6항

□ **교육부**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참고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휘문의숙 및 휘문고 대상 민원감사·종합감사 결과, 법원의 관련 판결, 청문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 구체적으로 지정 취소와 관련한 절차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정 취소 절차**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또한,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1호

□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7항

【붙임】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장이 있는 경우
5. 삭제 <2020. 2. 28.>
- ⑤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 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⑦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5조의7(청문) 교육감은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6. 29., 2011. 6. 7.>

1.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